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07

발의연월일: 2021. 2. 3.

발 의 자: 강민정 · 문정복 · 김승남

양정숙 · 맹성규 · 한병도

김영호 • 류호정 • 황운하

김진애 • 박영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2014년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77명, 고등학교 49명이었으나 201 8년에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297명, 고등학교 207명 크게 늘어났으며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장애학생의 경우 심리적·물리적으로 폭력에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를 적극적으 로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호규 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 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1.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 우
- 2.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인 경우
- ④ 장애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장애의 정의,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의 병과 또는 가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②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	하는 경우에는		
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			
을 가중할 수 있다.			
<u><신 설></u>	1.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		
	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		
	위일 경우		
<u><신 설></u>	2.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인		
	<u>경우</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장애학생에 대하여 학교폭		
	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은 교육		
	감이 정한 기관에서 장애의 정		
	의,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특별교		
	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4	\sim	10	(생	략)

①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있다.

① (생략)

$\underline{\bigcirc}$ \sim $\underline{\bigcirc}$ (현행 제 4 항부터 제 1
0항까지와 같음)
<u>12</u>
<u>제8항</u>
<u>.</u>
◎ (현행 제12항과 같음)